

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
(제12조제1항 관련)

구분	사업종류	세부내용	지원비율
1. 주민 복지 사업	가. 사회복지사업	노인복지회관, 마을회관, 양로시설, 경로당, 아동상담소, 아동복지관, 어린이집, 종합복지관,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	75/100
	나. 체육사업	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	75/100
	다. 교육문화사업	도서관 또는 교육·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	75/100
	라. 그 밖의 사업	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65/100
2. 소득 증대 사업	가. 공동작업장 사업	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, 구판장의 설치,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	75/100
	나. 공동영농사업	농로, 농업용수로, 농업용 양수장,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	75/100
	다. 일자리 창출 사업	취약계층, 여성,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	75/100
	라. 그 밖의 사업	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65/100